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4

제출년월일 2000. 8. 27

제 출 자 파주시장

□ 제안이유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까지 포괄적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명을 파주시문화유산보존관리조례로 한다.
- 나. 문화유산이라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문화유산의 전통문화, 예술, 역사, 학술, 기술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와 문화유산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파주시문예진흥위원회가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안제2조제1호제2호제3호)
- 다. 시장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안제3조)
- 라. 유형·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며, 시장은 문화유산으로써 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안제4조제2항제3항)
- 마. 문화유산 지정기준은 문화·예술·역사·학술·기술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 및 자료, 보호관리함으로써 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및 자료(제6조제1호제2호)
- 바. 시장은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문화원, 문화유산관련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안제7조)
- 사.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다.(안제8조)
- 아.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유산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현상변경한 자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안제19조)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문화유산보존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문화유산의 전통문화, 예술, 역사, 학술, 기술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문화유산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3.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3조(심의) 시장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의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지정 및 해제 등) ①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파주시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서는 별표1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신청된 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지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문화유산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지정명칭) 시장은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문화유산은 유·무형을 나누지 아니하고 향토유적이라 한다.

제6조(지정기준) 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역사·학술·기술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 및 자료
2. 보호관리함으로써 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및 자료

제7조(위탁) 시장은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파주문화원
2. 문화유산 관련단체

제8조(보호구역지정)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제6조에 의한다.

②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제9조(고시) 시장은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사항을 시보·게시판등을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서 교부) 지정된 문화유산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문화유산지정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지정)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유산의 관리자는 건조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화유산의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조물 또는 토지소유자가 불확실할 경우

2. 건조물 또는 토지소유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읍·면·동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관리자등의 의무) ①시장 및 문화유산관리자는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2. 문화유산과 보호구역내의 토지매수

3. 문화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시, 문화유산 보존검토

4.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②주민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무형자원 또는 자료의 훼손행위

2. 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문화유산을 도굴하는 행위

3. 보호구역내의 방화 또는 일수(溢水)에 의해 문화유산을 파손하는 행위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문화유산으로 지정받는 행위

5. 기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행정명령의 위반행위

제13조(점검) 시장은 문화유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보조)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집중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문화유산을 집중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보존장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용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작성 보관) ①시장은 문화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3호서식에 의한다.

②문화유산 대장은 당해 문화유산과 보호구역의 사진, 실측도,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

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안내판)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안내판에는 문화유산명, 지정번호, 소재지와 유래, 특징 및 역사적 가치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안내판의 규격과 형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계도 등) ①시장은 문화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항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문화유산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①시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유산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현상변경한 자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지정된 향토유적은 이 조례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문화체육과 ☎ 940-4351
입 안 자	문화체육과장	박 재 홍
	문화예술담당	신 동 주
	담 당 자	백 희 순

[별표 1]

파주시 문화유산 지정신청서

문화유산의 명칭			수 량	
소재지 또는 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 명	※ 무형유산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년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주소(전화번호)			
문화유산의 작가, 유래 및 전설 (구체적인 연혁 및 내용)	※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문화유산 주변 현상에 관한설명	※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 문화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무형인 경우 내용과 특징			

위와 같이 파주시 문화유산으로 지정신청합니다.

200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파주시장 귀하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내 용	과 태 료	비고
손상 또는 은닉	문화유산보존관리조례제8조 제2 항의 심의를 받지아니하고 고의 로 훼손하여 현상변경한 경우	500만원	
도굴	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매장 문화재를 발굴한 경우	400만원	
방화 및 파손	문화유산보호구역내의 방화및 일수(溢水)에 의해 문화유산을 파손하게 한 경우	300만원	溢水: 물에잠기 게하는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유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 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경우	200만원	
행정명령 위반	문화유산보존관리상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향토유적) 제 호

지 정 서

위 치 :
명 칭 :
수 량 :

위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별지제2호서식]

문화유산지정서 발급대상

발급번호	발급월일	명칭	지정번호	지정 년월일	소재지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보호구역	관리자 주 소 성 명	

문 화 유 산 대 장

지정번호	명 칭				지정일			
형식또는 형 태	구 조		규격크기		작 자			
소 제 지 또 는 보관장소	수 량	소유자	주 소		관 리 자 또 는 관리단체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성 명 (전화번호)		
부속시설물			건축또는 제작년대					
보호구역	지번	지목	지정	소유자		관리자		
지정사유			자매결연					
인혁(유래)				주변현황				

[별지제4호서식]

- 간판규격은 문화재간판 C형으로 한다.
- 내 용

